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경유)

제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고용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의한 현장실습생도 '18. 9. 11.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이 널리 홍보되어 실습생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대학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사업장에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 (적용 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생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과장	정용석	차장	김광배	적용계획부장	전결 09/21
협조자				김상철	
시행	적용계획부-3832	(2018.09.21.)	접수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증가로 340		/	
전화	0527047213	전송	/connoisseur@kcomwel.or.kr	/	대국민 공개